

가스터빈 요건 개정

관련 규칙	시행 일정
5편 2장 4절	2021년 7월 1일 이후 건조계약 되는 선박

○ 개정 사유

- 가스터빈 요건이 오래 동안 개정되지 않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. 이에 신기술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함.

○ 개정 사항

- 승인용 도면 및 자료, 참고용 도면 및 자료로 구분하고 안전장치의 목록, FMEA 보고서, 봉쇄(containment)에 관한 문서를 추가함.
- 주요부품, 주추진용 가스터빈, 가스터빈, 가스발생기(gas generator), 출력터빈(power turbine)의 정의를 신설함.
- 봉쇄에 관한 요건을 추가함.
- IACS UR M60 2.1을 반영하여 가스터빈 안전장치에 대한 FMEA 평가 요건 신설.
- 운전정지를 주추진용 가스터빈과 주추진용 이외의 가스터빈으로 구분하고 자동 시동 실패 시 운전정지, 출력터빈 입구 온도를 추가함.
- 흡기장치의 배치, 빙에 대한 방안, 여과장치 및 loose parts에 의한 위험성으로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함.

○ 영향 분석

- ✓ 안전, 보안 또는 환경보호에 미치는 영향 및/또는 기여
: 봉쇄에 관련 요건 및 가스터빈 안전장치에 대한 FMEA 평가 요건을 신설하여 가스터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함.
- ✓ 순치수 또는 총치수에 미치는 영향
: N/A